



의안번호	제96호
------	------

<p>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

발 의 자	서 원 의원 외 3명
발의연월일	2020. 8. 25.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6호
----------	------

발의연월일 : 2020. 8. 25.

대표발의자 : 서 원

공동발의자 : 조배식, 최정숙,
김만중

1. 제안이유

논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요구를 받은 이해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진술을 거부 시 과태료 부과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1호 서식에 증인출석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9조)
- 과태료 부과 및 사후조치 절차를 규정(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 2020. 8. 25. ~ 8. 29.(5일간)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표 1에 따른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1조(과태료 부과)**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 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결정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1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논산시의회 의원	서원 의원 외 3명

[별표 1]

라. 증인출석요구서

증인출석 요구서(제9조제4항 관련)

귀하

논산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귀하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출석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하여야 하는 날의 1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논산시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2. 출석장소 :
3. 질문요지 :
4. 기 타 :

년 월 일

논 산 시 의 회 의 장

[별표 1]

마.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별	과 태 료
1.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가.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시 출석거부 3회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나.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시 출석거부 2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다.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시 출석거부 1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 선서 또는 증언(진술)을 거부한 자	
가.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시 선서 또는 증언(진술)거부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 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	
가.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시 서류 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비고> :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

[별표 1]

바. 과태료 부과·결정 통보서(제21조제2항 관련)

과태료 부과·결정 통보서

논 산 시 장 귀하

논산시의회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지방자치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부과내역
가. 대 상 자 :
나. 부과금액 :
2. 부과이유
3. 첨부서류
4.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논 산 시 의 회 의 장

현행	개정안
	<p><u>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결정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u>③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신 설></p>	<p>[별표 1] 라. 증인출석요구서</p> <p style="text-align: center;">증인출석 요구서(제9조제4항 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논산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귀하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귀하께서 출석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p> <p>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하여야 하는 날의 1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논산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p> <p>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2. 출석장소 : 3. 질문요지 : 4. 기 타 :</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논산시 의회 의장</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별표 1] 마.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제21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위 반 행 위 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과 태 료</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1.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td> </tr> <tr> <td>가.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3회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td> </tr> <tr> <td>나.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2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td> </tr> <tr> <td>다.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1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td> </tr> <tr> <td colspan="2">2. 선서 또는 증언(진술)을 거부한 자</td> </tr> <tr> <td>가.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 선서 또는 증언(진술)거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td> </tr> <tr> <td colspan="2">3.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 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td> </tr> <tr> <td>가.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 서류 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td> </tr> </tbody> </table> <p><비고> :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p>	위 반 행 위 별	과 태 료	1.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가.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3회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나.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2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다.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1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 선서 또는 증언(진술)을 거부한 자		가.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 선서 또는 증언(진술)거부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 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		가.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 서류 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위 반 행 위 별	과 태 료																		
1.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가.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3회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나.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2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다.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1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 선서 또는 증언(진술)을 거부한 자																			
가.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 선서 또는 증언(진술)거부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 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																			
가.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 서류 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현행	개정안
<p><신 설></p>	<p>[별표 1] 바. 과태료 부과·결정 통보서</p> <p>과태료 부과·결정 통보서 (제21조제2항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과태료 부과·결정 통보서</p> <p>논 산 시 장 귀하</p> <p>논산시의회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지방자치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과내역 가. 대상자 : 나. 부과금액 : 2. 부과이유 3. 첨부서류 4. 그 밖의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논 산 시 의 회 의 장</p> </div>

■ 지방자치법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